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8. 12.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11월 19일

· 회부일자 : 1998년 11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1998. 12.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가. 제안이유

-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 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바 이와 관련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적용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인 제조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가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을 차등적용

· 공유재산 매수시 매수금액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조성한 재산매수시 투자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공장부지 매수시,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 규모의 공장부지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가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을 차등적용
(안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23조의 3, 제39조의 4)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확대

· 현행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 공공사업으로 인한 그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시, 소규모 토지매각시,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매각시등에 한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토지 매각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각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경우 등을 추가하여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2조)

○ 공유재산(건물)사용자 산출방식 개선

- 현재까지 공유재산(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할 때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 이를 건물의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안 제25조)

○ 공유재산(갑종재산) 매각면적의 기준확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폐천부지의 면적을
 - 시의 동지역일 경우 현행 1,321㎡이하에서 3,300㎡로
 - 읍면지역은 3,300㎡이하에서 6,600㎡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 2)

○ 청사설계시 사무실의 칸막이 설치에 대한 규정신설

- 각 사무실의 칸막이를 내력벽 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 불필요 예산을 절감토록 함(안 제47조)

○ 관사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 현행 조례에는 관사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동 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98. 7. 16)되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때는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제조업과 고용창출 초과가 300명이상인 제조업 및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등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외에는 감면율을 차등적용토록 하였고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매수시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조성한 재산매수시와 투자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공장부지 매수시 및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 규모의

공장부지 매수시 전액감면하고 그외에는 차등적용토록 하는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폐
천부지 면적을 시의 동지역일 경우 현행 1,320제곱미터 이하
에서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였고

읍면지역의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민편익을 기여하고자 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